

■ 최신 판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이광선 변호사 | 백규하 변호사

운전직 근로자들의 일비 7,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러한 근로자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노사는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위 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일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비를 복리후생적 금원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일 출근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은 일률적으로 이 사건 일비를 지급받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이 사건 일비를 지급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함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인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가 부담할 추가 퇴직금 등의 규모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이 부담할 추가 퇴직금 등의 전체 규모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나. 또한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피고 회사의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 다. 한편 원고의 추가 퇴직금 청구액은 약 3,6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이는 피고의 연 매출액 약 40억 원의 약 0.9%, 피고의 자본금 5억 3,000만 원의 약 6.7%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라.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수년간 계속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적자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가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해 오면서 위 영업손실액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온 한편, 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